

...

특집

사회복지수용시설, 이래도 되는가

“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함께 올해 또 한번 우리의 가슴을 무너져 내리게 한 대형참사가 바로 지난 8월 21일 새벽 2시 10분께 발생, 수많은 인명을 앗아 간 경기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이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아직도 인권의 사각지대가 엄존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한번 한없이 부끄러워해야 했으며, 그렇게 되기까지 방관만 했던 우리들 자신에 대한 자괴감을 곱씹어야만 했다.

그러나 그도 잠깐, 여느때와 다름없이 사건은 사건으로만 남았을 뿐 그 충격과 교훈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가고 있다.

제2, 제3의 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맹성(猛省)의 뜻을 담아 우리 나라 사회복지수용시설의 현주소를 긴급 점검한다.

”

〈편집부〉

글 실는 순서

- ① 경기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에 임하여 / 김철준
- ② 사회복지수용시설의 운영실태와 대책 / 조홍식
- ③ 부녀복지시설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권순영

특집 / 사회복지수용시설, 이래도 되는가

특집 / 사회복지수용시설, 이래도 되는가 ①

경기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에 임하여

김 철 준*
(변 호 사)

지난 8월 21일 새벽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마북리에 있는 경기여자기술학원에서 어린 소녀 원생들이 불을 내고 탈출하려다가 40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 이 사건으로 인하여 19명의 원생들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라는 무거운 죄목으로 구속되었고, 위 기술학원의 원장과 사무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구속되어 현재 함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여자기술학원은 본래 윤락행위등방지법 제8조에 근거하여 매춘에 빠져든 여성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60년대 초에 개설된 윤락여성 보호시설이다. 그후 1983년 1월 경기도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자선사업재단에 위 학원의 운영을 위탁하였고, 재단은 연간 11억 3천만원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검·경의 단속으로 적발된 윤락여성이나 청소년선도위원들에 의하여 단속된 가출소녀, 그리고 자녀의 직업교육을 원하는 부모들의 요청으로 어린 소녀들을 받아들여 직업교육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이 사건 당시 137명의 원생들을 1, 2층 기숙사에 수용하고 미용, 양재 등 6개의 과정으로 나누어 교육하고 있었다.

* 필자는 현재 경기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의 피해자측 변호인으로 이 사건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원생들은 평소에 외출제한이나 서신검열 등을 당하는 통제된 합숙생활과 엄격한 교육과정, 과중한 청소부담에 불만을 품어오다가 이 사건 이틀전 낮에 동료원생 2명이 울타리를 넘어 탈출하고, 같은 날 오후에 또 동료원생 6명이 탈출을 시도하다가 붙잡혀 교육연장기간 등의 징계를 받게 되자 더욱 불만이 쌓여 불을 내고 탈출하기로 모의한 후, 이 사건 당일 02:00경 생활관 1, 2층에서 각각 종이와 이불을 모아 놓고 베이비 오일을 뿌려 방화하고 소화기로 출입문을 부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부서지지 않아 1, 2층 화장실로 대피하였다가, 2층 화장실로 대피하였던 40명이 사망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원장과 사무장도 원생들의 탈주를 방지하기 위해 생활관의 1층과 2층의 출입문을 특수강화유리로 설치하고 각 층의 비상구에는 자바라식 철문을 설치한 후 밖으로 시정장치를 하고, 창문에는 쇠창살을 설치한 점, 화재 등 긴급상황시 원생들이 신속히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당직실을 생활관 부근에 두고, 그 시정장치를 당직 근무자뿐만 아니라 청원경찰, 사감 등에게도 열 수 있게 하거나 비상구 등의 대피통로를 확보하는 등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점, 그후 위 출입문에 체인식 시정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고, 위 생활관에서 약 7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당직근무자 1명만이 그 열쇠를 소지하도록 하여 구조가 지연될 수밖에 없도록 한 점, 비상구에 자바라식 철문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시정한 후, 그 안에는 탁자 위에 텔레비전을 두고 전혀 이용하지 않아 비상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점, 경보기에 대한 점검을 게을리하여 경보장치가 꺼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방치한 점 등의 과실을 저지른 것으로 현재 기소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어떠한 법적 근거로 나이 어린 소녀들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강제수용하였는가, 대대체 기술학원의 생활과 교육이 어떠하였기에 원생들은 교육기관을 지옥처럼 여기면서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하였는가, 그동안 이 학원에서 원생들의 탈출사건이 잇따랐는데도 왜 탈출을 방지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였지 학원 운영의 문제는 전혀 개선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가 먼저 밝혀져야 할 중요한 쟁점이다.

이것은 아이들이 정말 철부지여서 탈출하려고 불을 내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자녀 누구라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탈출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순식간에 40명이나 사망하는 대형사고로 발전한 이유가 기숙사 출입문을 이중으로 잠근 데다가 화재발생후 학원의 관리자들이 적절하게 긴급 대처하지 못한 때문인지, 아니면 애초에 불을 낸 아이들의 잘못인지, 정말 40명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는지 밝혀져야 할 것이다. 경기도와 수원소방서로부터 기숙사 출입문을 밖에서 자물쇠로 잠그고 창문을 쇠창살로 봉쇄하는 것은 화재때 대형 인명사고가 예상되므로 위 쇠창살과 출입문의 자물쇠를 제거하라는 시정조치를 여러차례 받았고, 불과 1년 전에는 이 사건과 똑같이 원생들이 탈출을 위하여 불을 냈다가 6명이 구속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지도 함께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때서야 이 사건 책임의 소재와 경중이 적절히 판단되고 그에 따라 사건 관계자들의 형사책임과 보상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경기여자기술학원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좀 더 검토해 보기로 한다.

첫째, 나이 어린 소녀들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강제수용하는 것이 과연 적법하고 정당한가.

일단 소녀들이 이 학원에 들어오게 되면 보호기간 내내 외출과 외박이 금지되고 전화, 서신도 통제되며 면회도 제한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수형생활을 하게 된다. 학원쪽은 원생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 주변에 철책과 초소를 설치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저녁식사 후에는 기숙사의 현관출입문을 밖에서 이중으로 잠그고 창문도 모두 쇠창살로 막아버려 사실상 원생들을 기숙사에 감금하는 것이다. 이 학원의 보호기간은 10개월이고 원생들이 2급 기능사 자격을 딸 경우 교육기간이 1개월 감면되지만, 탈출하다가 적발되거나 다른 징계사유가 생기면 30일 범위내에서 보호기간을 연장시킨다. 결국 이것은 명백한 신체와 자유에 대한 제한인 것이다. 따라서 마땅히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사법절차를 거쳐야만 이러한 보호시설에 수용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한 구금으로서 당연히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그런데 기술학원은 그동안 윤락행위등방지법 제8조의 '상습적인 윤락 행위자나 윤락행위의 우려가 있는 자는 선도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윤락여성을 강제수용해 왔다.

그러나 윤락여성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 등 사법절차가 전혀 없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자체가 기본권의 침해일 뿐만 아니라, 위법에 수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경찰이 윤락여성을 단속하는 방식도 대단히 자의적이어서 법집행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윤락여성은 점차 줄어들고 오히려 가출하였다가 청소년 선도위원들에게 적발되어 부모의 동의 아래 수용되는 아이가 대부분이며 최근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단순히 직업교육을 받기 위하여 들어온 아이들도 상당수 있다(이 학원의 원생 137명 중 8명만이 윤락여성이고 나머지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 수용한 원생들이다). 이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부모의 동의만 얻어 강제수용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그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보호하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이것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원생들의 진술에 의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학원에서 한시도 머물고 싶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입소당시 단순히 기숙사가 딸려 있는 기술학원으로만 생각하고 왔다가 교도소처럼 철책이 쳐져 있는 학원을 보고는 정문 앞에서 들어가지 않겠다고 몸부림치다가 청원경찰에 의하여 끌려 들어가기도 하였다. 더구나 부모가 자녀를 학원에 들어보낸 후 뒤늦게 자기의 자녀가 학원생활을 견뎌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퇴소를 원해도 학원쪽은 학교에 복학하였다는 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한 아이의 퇴소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와 마찰을 빚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명목으로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수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둘째, 원생들의 학원에서의 생활과 교육내용이 어떠하였으며, 그것이

어린 소녀들에 대한 교육목적에 적합한 것이었는가.

우선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소녀에게 신체의 구속과 교육은 결코 양립하지 않는다. 그들이 스스로 구속되어 있다고 느끼는 순간 어떠한 내용의 교육도 그들에게는 소용이 없는 것이다. 원생들도 이구동성으로 학원의 모든 창문을 쇠창살로 막아놓고 기숙사의 출입문과 비상구를 밖에서 이중으로 잠궤 놓은 채 그 안에서 생활하도록 한 것이 무엇보다도 건디기 힘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게다가 원생들은 학원의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욕설과 구타를 당하기 일쑤였고 싸우거나 도망치다 걸리면 교육기간 연장이라는 징계를 당하였다. 무엇보다도 학원측의 방치하에 이루어지는 고참의 횡포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 그렇다면 그곳은 더 이상 교육기관이 아니지 않은가.

원생들에게 실시하는 교육내용도 결코 적절한 것이 아니었다.

원생들이 모두 10대의 발달한 소녀들인데도 이들에게 실시하는 교육은 과거 윤락여성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미용, 양재, 자수, 요리, 한복 등의 직업훈련이어서 이들에게 아무런 흥미도 관심도 주지 못하였다. 또한 이들 소녀들이 일부 윤락여성과 함께 수용됨으로써 나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실제로 원생들은 윤락여성으로부터 시달림을 받았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원생들은 이러한 학원생활에 대하여 고통스러워 하면서 오직 퇴소하는 날만을 기다리거나 끊임없이 탈출을 기도하여 이 사건과 같은 사고를 저지르게 된 것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 칼로 팔목의 혈관을 끊고 자살을 기도하였다는 원생도 있는데 원생들에 의하여 확인된 위와 같은 자살기도사건만도 3건이 되었다.

그동안 정부는 문제아에 대하여 말로는 교육을 통하여 자립능력을 키워주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데 주력해 왔고, 가족이나 시민들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다. 이러한 태도는 이 기술학원이 원생들을 함부로 대하며 인권을 무시해도 좋은 대상으로 취급하게 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교육기관이라는 이름으로 사회로부터 사람들을 격리

수용하고 있는 모든 시설의 운영실태를 재검토하고 그 운영방향을 진정한 의미의 청소년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이 여기에 참여해야 한다. 수용시설별로 시민이나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시민들이 운영에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기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에서 드러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무관심과 안전에 대한 불감증은 선진사회로 가는 길목에 가로막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 놓지 않는 한 아무리 국민소득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결코 선진사회로 들어갈 수 없고, 그 사회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회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法曹人 眼鏡專門店

강남 명동 안경 · 콘택트

TEL : (代)525-7474, 2802~3

₩ 가격파괴 ₩

30~50%

법원, 상봉역회점, 시소역, 외환은행, 교대역, 명동안경, 교목대학

사회복지수용시설의 운영실태와 대책

조 흥 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난 여름에 발생한 '소쩍새 마을' 사건과 '경기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은 현재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복지수용시설의 문제들을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었다고 하겠다.

소쩍새 마을 사건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 어느 곳에 의한 통제를 받지 않는 비인가 수용시설이 버젓이 복지시설의 기능을 해 왔을 뿐 아니라 엄청난 모금도 전혀 사회적 인가 없이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리고 경기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은 윤락여성 및 가출소년의 사회적, 직업적 재활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경기도가 설립한 시설을 민간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가운데, 시설측의 과잉통제와 원생간의 가혹행위 등 비전문적이고 반인권적인 운영상의 문제를 노정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의 관심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우리 나라에서 사회복지수용시설에 대한 일반의 관심은 극히 적으며, 항상 사회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어 이렇게 사건들이 터질 때만 잠시 웅성거리다가 곧 분명한 뒷마무리 없이 잊혀져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그러나 이번만은 시설 수용자들의 인격과 인권을 보장하는 바람직한 사회복지수용시설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실천에 옮김으로써 다시는 이런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사회복지수용시설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사회복지수용시설은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한 유형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거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복지법,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기타 복지사업과 복지시설의 운영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수용시설과 이용시설로 대별할 수 있는데, 수용시설은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부녀복지시설, 부랑인선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질환자요양시설 등이 있고, 이용시설은 아동상담소, 보육시설, 아동회관, 부녀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등이 있다. 1995년 1월 현재 수용시설수는 759 개소에 수용인원은 76,723명, 시설종사자수는 10,003명에 이르고 있는데, 특히 운영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수용시설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인권보장적인 사회보호보다 사회방위적인 사회격리 관점의 통용

사회부적응, 가출, 비행, 부랑인, 고아, 기아, 생활무능력, 신체·정신장애, 윤락 등 제반 사회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식은 사회적 다수의 보호라는 미명하에 소수에 대한 처벌적 관점에서 사회격리에 치중되고 있다. 따라서 시설 수용자의 복지권 개념이 인권보장 차원에서 무시당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하겠다.

나. 시설 수용자의 보호수준 미흡

첫째, 생계보호의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계측한 1994년 1인가구 규모의 최저생계비는 전국 평균이 206,000원 수준이며, 대도시의 경우는 223,000원이다. 이에 비해 사회복지시설의 생계보호수준은 75,000원 수준이다. 물론 시설 수용자의 경우 가구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1인가구의 생계비와 직접적인 비교는 불

가능하지만 보호의 수준은 매우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생활보호법과 기타 사회복지관련법에 의하면 국가, 지자체 및 민간이 시설보호의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만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드문 실정이고 대부분 민간이 운영주체가 되어 있으므로 공공요금, 수용비 등 운영비 항목에서 법인의 자부담 20%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첫째, 과도한 노동시간과 업무량이다. 1일 12시간 이상 노동하는 경우가 60% 이상이며, 심지어 24시간 노동하는 경우도 45.5%나 되어 근로기준법의 주당 44시간 노동이나 전(全)산업 주평균인 47.5시간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 또한 1인당 담당해야 할 대상자가 너무 많아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둘째, 임금이 너무 열악하다. 임금조건은 동일 학력의 일반기업체 노동자나 공무원의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유사 사회복지 직종(사회복지전문요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 등)에 비해서도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시설 직원의 확보실태가 법적 규정에 미달할 뿐 아니라 -전직원의 20%를 사회복지사 자격자로 채용해야 하나 법적 채용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시설이 많다- 시설장의 가족, 친인척, 친지 등이 이름만 올라 있을 뿐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받는 탈법적 사례도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조직(노동조합) 활동이 부재하다.

라. 시설 운영의 비민주성·폐쇄성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민주적인 이사회에 의한 의사결정 또는 시설직원이나 지역주민의 참여 속에서 운영된다기 보다는 시설장의 독단에 의하거나 친인척 중심으로 운영되는 등 시설의 폐쇄성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개혁 없이는 시설비리와 수용대상자의 인권침해 개선은 불가능하다.

마. 시설에 대한 정부인가 기준의 비현실성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회복지시설의 설비 및 규모에 관해서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규모는 최저 5억원 이상, 연간 운영비는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되고 있다. 예컨대 50인의 입소 정원의 지체장애인 재활시설을 중소도시에 설립할 경우 330평의 시설(시설면적 산출공식은 시설종류별 1인당 소요면적(21.78 제곱미터)×입소정원)과 600평 이상의 대지 및 운동장(부지면적 산출공식은 시설면적×5/10+운동장)이 있어야 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서 1년에 약 2억9천만원의 최소 기본재산(수익용 기본재산 산출공식은 수용인원 1인당 연간 소요경비(2,922,000원)×입소정원×20/100(자체부담률)×10(수익률))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우리 나라 시설의 영세성에 비추어 볼 때 비현실적이며, 비인가 수용시설의 난립화 및 이들 시설의 양성화의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바. 정부의 지도감독 소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의 설립,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의 의무를 갖고 있으면서도 시설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수용자에 대한 비인권적 대우, 전문적 사업수행 등에 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시설장과의 유착도 한 원인은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지도감독할 만한 전문성을 정부 공무원이 지니지 못하고 있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시설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도 인가법인시설의 경우 1987년과 1991년 두차례 조사밖에 하지 않았으며, 비인가시설의 경우 아무런 조사조차도 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은 아예 생각할 수조차 없는 실정이다.

2. 대책

가. 국가책임의 강화 및 보호수준의 향상

첫째, 국가책임하에 사회복지시설 전반의 설치,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수용대상자의 요구와 특성에 따라 수용되도록 하고, 예산을 들여 대규모 수용시설을 늘리는 것 보다 전문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소규모 시설을 확대해 나가는 것과 같은 적절한 시설 공급에 대한 단·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국가에서 지원의 책임(법인보조금)을 확충하여 실제 운영비의 100%를 전액 지원하고 보호수준을 최저생계 수준 이상으로 끌어 올림으로써 시설 수용자의 삶의 질의 최저선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나. 시설 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

첫째, 생활지도교사, 간호사, 취사세탁부, 경비원 등은 근로기준법에 입각하여 2교대제, 3교대제 등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1일 8시간, 주 44시간 근무를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 인건비 중 법인 자부담 10%를 철폐하고 국가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해야 하며, 시설직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직 공무원(사회복지전문요원)에 준하는 노동조건을 갖추도록 한다.

셋째, 보수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의무화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규채용자의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충분한 기본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며,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는 모든 보조원을 포함한 전 직원이 매년 체계적이고 전문성이 충분한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넷째, 시설 직원 채용현황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탈법적인 경우 적발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시설 운영 비리의 척결

첫째, 시설에 대한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시설내의 인권 실태, 재정상황 등에 대해서는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에 대한 전문성을 갖도록 한다.

둘째, 지방의회의 감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그 내용의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셋째, 시설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감시 기능의 활성화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설운영에 관한 정보와 감독관청의 관리·감독 결과에 대한 시민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

라. 시설 운영의 민주화·사회화 실현

첫째, 이사회에 친인척의 참여를 전면 배제하고 직원대표와 지역주민, 그리고 사회복지관련단체의 참여를 일정수준 보장해야 한다. 또한 이사회 회의내용 및 시설 재정을 공개해서 시설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시설의 민주적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시설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유도해야 한다. 시설장(施設長)의 경우 타 직종의 겸업을 금지하고 사회복지 전문인력으로 배치하여 시설의 전문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설장의 자격제한을 엄격히 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시설장의 정년퇴임제도 도입을 통해 시설의 사회화를 위한 자체의 적극적 노력과 활력있는 시설 운영을 유도해야 한다.

마. 시설의 전문화와 소규모화 추진

첫째, 정부보조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일률지급(규모에 상관없는 1인당 일정액의 산출방식)에서 보호단가의 차등지원 방식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둘째, 기존의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비인가시설은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소규모 시설로의 양성화를 시도해야 한다. 일례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회복지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시·군·구 별로 특성에 맞게 장애인·노인·육아·모자·부녀시설 등의 소규모 시설(그룹홈)을 1개소씩 시범운영 한 후 이의 성과를 토대로 확대하도록 한다.

부녀복지시설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권 순 영
(한국여성의 집 대표)

오늘날 산업화·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모든 면에서 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하여 빈곤선(線) 이하의 모자세대와 저소득층의 근로여성, 불우한 환경에 빠진 미혼모와 윤락여성이 발생함으로써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덕목은 허울에 불과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경시되어 사회문제화되어 오면서 요보호여성의 문제도 점차 증대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혼모와 윤락여성은 국가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문제로서의 심각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최근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매우 고무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삶의 질의 세계화'가 천명되고 국민복지의 기본원칙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부녀복지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부녀복지의 발전방안을 모색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하에서 지난 8월 21일 경기여자기술학원에서 발생한 끔찍한 방화사건은 우리들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준 것이었다. 장기간에 걸친 기술학원측의 비인격적인 처우를 견디지 못한 일부 원생들이 고의로 방화를 저지른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아직도 인권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우리 모두가 -정부나 행정공무원, 시설 관계자, 그리고 국민 전체

- 깊이 반성하고 주변에 소외된 계층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책임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사건이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문제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아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이러한 유형의 불상사가 두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부녀복지시설에 잠재되어 있는 여러 문제점들은 앞으로 제2, 제3의 경기여자기술학원 사고를 일으킬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87년 부산 형제복지원사건을 비롯하여 그간 사회복지시설의 열악한 환경과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졌지만, 아직도 많은 수의 사회복지시설이 '원생 가둬두기' 차원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부녀복지시설 운영상의 문제들을 실무자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그에 따른 해결책 및 부녀복지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부녀복지시설이 일반인들에게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녀복지시설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다음에서는 시설운영 전반에 걸친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우리 나라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에 공통된 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의 영세성은 부녀복지시설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부녀복지시설의 경우 연간 수입재정이 정부보조에 의존하는 기초적인 운영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시설 별도의 수익사업이 미흡한 상태이고, 대부분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시설 수용생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처럼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들이 수용인원에 비례한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보다는 수용인원 확보에만 전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아울러 수용인원 비례방식의 지원으로 인해 시설의 양적인 성장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시설 운영의 적자를 면하기 위해 적합한 수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시설에 수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왜냐하면 정원이 충족되지 않으면 시설이 재정난에 허덕

이게 되고, 시설을 유지해 나가는 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수용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알아보면 95년 현재 시설 수용대상자 1인당 주식비 월 19,400여원, 부식비 월 30,600원, 연료비 월 1,650원, 피복비 월 4,150원, 수용경비 월 2,070원, 의료비 월 2,040원, 재료비 월 8,040원, 공공요금 월 1,350원 등과 건물유지비 등을 포함해 총 8만여원 정도가 고작인데, 이것은 우리 나라의 현재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 운영 소요경비를 과학적·합리적으로 산출하여 보다 현실적인 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어야 하겠고, 현행 입소자수 비례의 획일적인 지원방식을 시설 종류별·규모별·지역별 차등지급 및 일정수의 입소정원 초과시 체감비례지원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시설에서 자체부담하고 있는 부분도 없애는 방향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같은 현실에 맞는 시설재정의 확보는 전문인력의 확보에 필수적인 뿐만 아니라 질적 서비스의 개선과 시설 기능의 향상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입소절차상의 문제

부녀복지시설의 입소절차는 시·도, 시·군·구의 부녀상담소에서 상담을 거쳐 입소신청서를 작성한 뒤 입소의뢰서를 시설에 발급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상자가 직접 시설로 찾아와서 시설내의 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입소를 하게 되므로 입소신청서를 시설에서 작성하고 구청을 통해 입소의뢰서를 발급받는 역순을 거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공무원들이 실적위주의 업무에만 지나치게 얽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말하자면, 시설에서 먼저 수용대상자를 확보한 다음 부녀상담원에게 보내는 절차를 따르고 있다는 것은 부녀상담원의 상담과정을 거쳐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여겨도 무방한 것이다. 따라서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수용생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입장이 되는데, 실지로 사회복지시설에서 홍보 - 시설안내 및 교육생 모집에 관한 - 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시설홍보를 의뢰해 보지만 마스크에 보도되는 일이 너무나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특히나 사회에서 소외계층으로 밀려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내용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시당하거나 순서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지 않으려면 많은 광고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나라 사회복지의 현실이다.

더욱이 얼마전에 발생했던 경기여자기술학원의 방화사건으로 인해 시설 수용생 확보의 어려움이 더욱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같은 맥락의 부녀직업보도시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부녀시설이 경기여자기술학원과 동일한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는 일반인들의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인 것이다. 시설에서 수용하는 대상자가 틀리기 때문에 경기여자기술학원과 전혀 다른 성격의 시설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 주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기술교육을 시키는 시설에서 숙식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냐고 따지는 사람이 많았고, 혹시라도 시설에서 수용교육을 받는 도중 가혹행위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 염려해서 시설에 입소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시설 수용률이 아주 저조한 실정이다.

이처럼 시기적으로 어려운 상황하에서는 더더욱 부녀상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부녀상담원이 제기능을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적합한 대상자가 시설에 수용되어질 수 있고, 또한 시설에서는 시설 고유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만이 시설의 질적 서비스 수준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프로그램 실시상의 문제

실제 프로그램 실시상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인원이 일정하지 않고 그 수가 적다는 점이다. 수용생 개개인의 재능과 정서함양을 위한 각종 교양 프로그램과 인성개발을 위한 심성훈련 프로그램 등을 자원봉사자나 전문가를 활용하여 다양하게 개발해 나가야 하는데 수용인원의 변동이 잦아서 정기적으로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에는 강사료 부담면에서나 합리적인 교육의 실시면에

서 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설 종사자의 전문화와 처우개선으로 시설 운영의 전문성 제고

현재 전국 22개소의 부녀직업보도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수용정원의 48.3%가 미달되는 수준인데 그 주된 원인은 시설 운영의 전문성 결여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부녀복지시설이 종래의 수용보호 위주에서 재활 중심의 운영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과제에 당면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미비와 예산부족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서비스에 대한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타직종에 비해 이직률이 높은 편인데 이는 타직종에 비해 보수가 적고 업무량이 많으며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사자 자녀들에 대한 학비보조, 승급, 승진제도, 수당제도 등 각종 후생복지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미흡한 실정이고 시설의 특성상 시설내에서 야간까지 수용자의 보호와 서비스를 위해 근무해야 하는 등 근무조건, 환경여건 등이 열악한 것도 한 원인이다.

오늘날 복지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는 증가되어가고 있으나 종사자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의 현 급여수준과 근무여건으로는 시설의 전문인력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시설 운영자나 정부는 관심을 가지고 이들에 대한 획기적인 처우 개선과 더불어 근무 환경의 개선을 통한 전문인력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시설 설비 및 주요장비의 부족

부녀복지시설의 설비는 먼저 질적인 수준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부녀복지시설에서는 주요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시설이 기준에 미달되거나 재구실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직업훈련에 필요한 장비도 노후되고 뒤져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현대적인 직업교육을 시키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본원의 경우에는 컴퓨터전산 과목을 직업보도 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90년도부터 286기종(16비트)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바, 매년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배정을 신청하지만 현실적으로 배정

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현대적인 장비를 보강하는 일이 너무 어려운 실정이고 따라서 현시대에 부합하는 직업교육을 시키기는 더욱 힘든 일이라고 본다.

이처럼 기능보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육수준이 높아질 수가 없으며, 따라서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기대해 볼 수가 없게 된다.

시설 수용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그들이 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목의 신설과 더불어 기술과목을 습득하는 데 필요한 현대적인 훈련장비와 교육분위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에서는 시설 수용생 확보에 주력하고 교육의 양적인 증가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많은데 실지로 부녀복지시설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술교육 과목을 사회현실과 수용생들의 능력에 맞도록 다양하게 현실화하고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시기적절하게 지원해 주고 동시에 퇴소후 사후지도를 위한 After-care의 기능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사회복지 행정기관과의 유기적 행정협조체제 미흡

부녀복지시설은 전문적인 행정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행정기관과의 상호협조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시설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며, 또한 시설이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의해 행정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나 간섭으로 인해 시설의 자율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담당공무원 개인의 사적인 감정을 공적인 업무에까지 연장시켜서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 일도 더러 생겨나기도 하고, 불필요하게 시설방문을 자주하면서 업무외적인 일로 번거롭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러한 일은 절대적으로 근절되어야 하며, 시설에서 자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 한다.

시설의 기능향상과 탈시설화

부녀복지시설이 사회통합을 이룩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충실히 이행

하기 위하여 시설의 기능을 향상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수용생들에게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기 위한 탈시설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립을 위한 직업기술 교육의 현대화 및 직업알선의 서비스 등을 위하여 각 전문기관의 조직적인 연계 체계의 확립과 이에 대한 법적 규정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체계론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 체계가 폐쇄적이면 새로운 사고를 자극하는 에너지가 외부로부터 거의 들어오지 않아 그 체계는 그들의 성장을 위한 기회를 거의 가지지 못한다. 특히 부녀복지시설의 사회통합과 시설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설 체계의 사회화와 기능의 다양화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또한 시설보호수준이 낮아서 시설보호에 대한 거부 반응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수용시설은 점차적으로 이용시설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것이며, 시설수용구호 위주에서 벗어나 수혜대상자들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자유롭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의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수혜대상자들을 반드시 시설내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과감하게 탈시설화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시설 종사자 자격규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 미비

현재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가운데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심지어는 시설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무자격자이면서 행정관서의 묵인하에 근무를 하고 있기도 하고, 또는 총무나 생활지도교사의 경우에는 자격증 유무를 가리지도 않고 몇년 동안 계속해서 근무를 해오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시설에서는 무자격자가 근무한다고 해서 강제로 사직을 종용받은 사례도 있었다. 종사자의 자격규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관서 담당자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 종사자들의 근무가능·불가능이 결정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은 빠른 시일내에 개선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종사자 채용에 있어 우왕좌왕하는 일도 없어야 하겠고, 무자격 종사자를 시설에 채용하는 사례도 없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

으면 종사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무자격자라 할지라도 책임감과 사명 의식을 가지고 시설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해 줌으로써 불필요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사자 자격규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시설의 지역편중성

현재 우리 나라 부녀복지시설의 경우 시설부족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것마저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전국 균등시혜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부녀복지시설에 있어서 시설 기능별로 볼 때 불우영세여성 보호시설의 대상자들은 대도시로 가서 직업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근래에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제로 인해 그 지역주민이 아닌 경우에는 시설에서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으므로 요보호여성에 대한 선도보호에 있어서 어떤 지역에서는 시설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부족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여건을 비추어 보면 대체로 정부의 관심도 비중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가 큰 것이었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부녀복지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국민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할 수 있겠다. 여성문제를 여성들만의 문제라고 한정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으나, 이것은 잘못된 편견이며 여성문제가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사회전반에 걸친 다각적인 관심과 국민의 참여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시설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부정적인 생각도 바뀌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와의 협조 및 결연사업 부족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은 아직도 지역사회와 유리되어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지역민간재원 조달은 시설

에 따라 상이하고 비체계적으로 전개되고 있어 오해의 소지가 되기도 하며, 시설간·지역간 격차가 심하다고 본다. 따라서 부녀복지시설의 프로그램 및 설비의 지역사회 개방으로 건전한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고, 부녀복지시설의 운영에 지역사회의 협조를 유도하며, 시설후원회의 조직화, 자원봉사자의 육성활용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을 극대화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녀복지시설은 기업체나 단체, 기관, 그리고 개인간에 상호부조정신에 입각한 결연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시설 수용생의 일상생활에는 물론 기술보도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취업알선서비스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주민 모두가 함께 협력하고 이해하는 분위기가 먼저 조성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현대사회가 산업사회로 급성장 발달하면서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로 인한 불의의 사고와 가족제도의 변화에 따른 이혼, 별거, 유기 등의 증가로 결손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가치관의 혼란과 도덕성의 붕괴로 가출여성, 불량여성, 미혼모와 윤락여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부녀복지시설은 이들을 수용·보호하고 선도하는 시설로써 그 책임과 역할을 막중한 것이다.

부녀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생들은 여러가지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정신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단순한 보호나 어떠한 물질적인 구호만으로는 자립이나 선도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부녀복지시설 수용생들의 자립·자활·선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신교육과 직업보도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재정의 확보와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녀복지시설은 전문기관으로서 바람직한 시설 환경과 사명감 있는 전문종사자의 노력으로 수용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을 지역별로 균등 배치하고,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시설 설비의 질적인 향상과 제반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윤락여성의 경우는 그 어느 대상보다도 일단 전락하면 선도하기가 매우 힘든 일이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거나, 우려가 있는 여성을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설에서는 수익성이 높고 산업화사회에 부응하는 기술보도 과목을 개발하여 그들에게 자립·자활의 길을 열어주는 일이 당면한 중요과제라고 생각한다.

이상과 같이 요보호여성의 문제는 사회, 경제, 문화 등 종합적인 사회 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요보호여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한 방법을 선택하여 대처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다시 말해서 상담사업에 의한 심리적 방법과 사회적 서비스 및 정책과 제도를 모두 동원해야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제 여성들은 보호받아야 하는 약자나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고 모든 사람이 골고루 잘 사는 복지사회를 건설해 나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절반의 책임을 맡아야 할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결국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요보호여성의 문제가 전체와 분리된 여성들만의 문제, 여성들만의 복지가 아니라 국민의 의식 변화와 경제적, 사회적 기반 조성 등 많은 과제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요보호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입안과 관계 기관, 공무원, 시설 종사자는 물론 모든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 부녀복지는 증진될 것이며, 민주적인 복지국가 건설에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들 모두의 의식개혁과 끊임없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